[변경 대비표]

가. 대상 펀드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3호[주식]
(변경전 : 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나. 변경 시행일 : 2016년 12월 1일

다. 주요 변경 내용 :

- 투자신탁 명칭 변경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추가
- 추가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및 전략 추가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수익률 변동성) 및 위험등급(2등급 -> 3등급) 변경
- 집합투자업자보수 인하
-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유보
- 재무정보 확정에 따른 운용성과 등 업데이트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전	정정후
펀드명	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3호[주식]**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④ 생략 ⑤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신설	①이 투자신탁의 명칭은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3호[주식]**'이라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 각호 이외의 모투자신탁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 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교보악사 파워 고배당 인덱스 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 2.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 3 조제 5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모투자신탁**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17조제1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 33 조(이익분배)	① ~ ② 생략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39 조(보수)	① ~ ③ 생략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2. Class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3. Class A-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4. Class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5.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6. Class C-I 수익증권	① ~ ③ 현행과 같음 1. Class A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2. Class 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3. Class A-f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4. Class C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5. Class C-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6. Class C-I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7. Class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8. Class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9. Class C-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10.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5 나. ~ 라. 생략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7. Class C-W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8. Class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9. Class C-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10. Class S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5**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10. 생략 ③~⑥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① 현행과 같음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10.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⑦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⑫ 생 략	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자산운용보고서에 한한다),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⑫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설명서]

<table>
<tr><th>구분</th><th>정정전</th><th>정정후</th></tr>
<tr><td>투자신탁 명칭 변경</td><td>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td><td>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3호[주식]</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td><td>-</td><td>연혁 추가</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td><td>-</td><td>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td></tr>
<tr><td>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td><td>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td><td>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70% 이상</td></tr>
<tr><td>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td><td>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KOSPI 200 고배당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d>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KOSPI200 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td></tr>
<tr><td>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td><td>모투자신탁 | 90% 이상 | 교보악사 파워 고배당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td><td>모투자신탁 | 70% 이상 | - 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대상 추가</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td><td>-</td><td>-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의 투자제한 추가</td></tr>
<tr><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td><td>(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교보악사 파워 고배당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td><td>(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교보악사 파워 고배당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교</td></tr>
</table>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2) 세부 운용전략** 신설 다. 비교지수 - KOSPI 200 고배당지수 ×100%	**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①KOSPI 200 지수 복제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용** **- 당사 인덱스 펀드 운용에 사용되는 KOSPI 200 복제 System 사용** **- 월 정기 리밸런싱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하여 추적오차의 최소화** **-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밸런싱 제약조건을 통하여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 **②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포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③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200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현물 vs 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선물)** **- 현물 vs 합성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합성선물)** **- 선물 vs 옵션 차익거래 (KOSPI200선물 vs KOSPI200합성선물(옵션))** **- 현물 vs 개별주식 선물 차익거래 (개별종목 vs 개별주식 선물)** **④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수익** **⑤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다.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 100%**
10. 집합투자기구의 위	투자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	**투자위험 등급 (3) 등급 다소 위험**

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험 수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비교지수인 KOSPI 200 고배당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지만 투자대상종목에 선정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 ▶ 특정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지 아니하고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 KOSPI 200 고배당지수 수익률에 연동하여 투자수익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 비교지수(KOSPI 200 고배당지수)와 관련한 다양한 차익거래 (선물 vs 현물)의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경우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인 교보악사자산운용㈜가 기준에 따른 것으로 판매회사가 제시하는 위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시기 전에 판매회사의 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참조)	**수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지만 투자대상종목에 선정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 ▶ 특정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지 아니하고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 KOSPI200지수 수익률에 연동하여 투자수익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 추적대상지수(KOSPI200지수)와 관련한 다양한 차익거래 (선물 vs 현물)의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2.31%)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에 기초하여 위험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 결산시점마다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의 변동성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평균수익률 대비 수익률이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는 통계량으로써 투자신탁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하나입니다. 높은 변동성은 높은 위험도를 의미합니다. (첨부 1 참조)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35%	-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15%**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트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보수 및 수수료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매3개월)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최근 사업연도로 갱신 라. 운용자산 규모 -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법령 개정내용으로 업데이트

[첨부 1]

(변경전)

<교보악사자산운용㈜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	위험수준	분류기준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형 등 투자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상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 기타 매우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8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기타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 8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 기타 다소 높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 투자비중이 5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차익거래형 등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중간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 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 원금보전 추구형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 기타 낮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 채무증권에의 투자가 단기 국공채로 한정된 집합투자기구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기타 매우 낮은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험자산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가.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BB+등급 이하의 채권, 파생상품 등

나. 중위험자산 : BBB-등급 이상의 채권, A3등급 이상의 CP/전자단기사채,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등

다.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A-등급 이상의 채권, A2-등급 이상의 CP/전자단기사채, 현금성 자산 등

2.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156주)간 펀드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분류기준표의 등급값을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함

3.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높은 위험등급을 적용함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투자국가, 환헤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함

5.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실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는 집합투자기구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내부절차에 따라 분류함

(변경후)

<교보악사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	위험수준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연환산 수익률의 변동성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연환산 수익률의 변동성 15 ~ 25%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연환산 수익률의 변동성 10 ~ 15%
4등급	중간 위험	연환산 수익률의 변동성 5 ~ 10%
5등급	낮은 위험	연환산 수익률의 변동성 0.5 ~ 5%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연환산 수익률의 변동성 0.5% 이하

주) 1.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매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156주)간 펀드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위험등급 분류기준표의 등급값을 비교하여 위험등급을 결정함

2.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악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실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는 집합투자기구의 세부적 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으로 이 위험등급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간투자설명서]

구분	정정전	정정후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교보악사 파워고배당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 3호[주식]**
Ⅰ.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집합투자기구 특징 : 이 자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주식,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투자신탁 등에 투자하여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OSPI200 고배당지수와 유사한 운용수익을 추구합니다. -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35%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인 KOSPI200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 - 보수 : 집합투자업자보수 : **연 0.15%**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비교지수인 KOSPI 200 고배당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벤치마크인 KOSPI200 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2. 투자전략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 파워 고배당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고배당지수 ×100%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구조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악사 파워 고배당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200 100%**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교보악사 파워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 1호(주식)** **①KOSPI 200 지수 복제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용** **- 당사 인덱스 펀드 운용에 사용되는 KOSPI 200 복제 System 사용** **- 월 정기 리밸런싱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하여 추적오차의 최소화** **-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밸런싱 제약조건을 통하여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

		②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포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③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200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현물 vs 선물 차익거래 (KOSPI200 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선물)** **- 현물 vs 합성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합성선물)** **- 선물 vs 옵션 차익거래 (KOSPI200 선물 vs KOSPI200합성선물(옵션))** **- 현물 vs 개별주식 선물 차익거래 (개별종목 vs 개별주식 선물)** **④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수익** **⑤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증권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90% 이상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주식,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투자신탁 등에 투자하여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KOSPI200 고배당지수와 유사한 운용수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투자신	3.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

	탁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의 경제여건 변화와 증권의 가격변동에 대한 상관관계, 증권의 투자위험,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2등급(높은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교보악사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표준편차 12.31%)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Ⅲ.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3. 집합투자기구의 요약 재무정보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